

서울고등법원 2018. 12. 18 선고 2018나2040899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 2018. 12. 18 선고 2018나2040899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6. 21 선고 2016가합577363 판결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기술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안형윤

피고, 항소인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문 담당변호사 홍성걸

변론 종결2018. 11. 13.

판결 선고2018. 12. 18.

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6. 21. 선고 2016가합577363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[청구취지]

1.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2016. 5. 16. 제1심 판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각 109,433,45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218,866,9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[항소취지]

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2. 고치는 부분

○ 제1심 판결 제7쪽 제11행 중 "갑 제6호증의"부터 같은 쪽 제12행 중 "악화되어"까지를 "갑 제6호증,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소외 회사는 2016년 전반기에 264,702,700원의 손실을 보는 등 이 사건 계약 무렵 이미 그 재정이 악화되어"로 고친다.

○ 제1심 판결 제7쪽 제21행 중 "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B가"를 "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제1심 공동피고 B는 2016. 6. 30. 기준으로 자산은 3,305,316,768원이었던 반면 채무는 3,583,965,226원에 이르러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제1심 공동피고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"로 고친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박영재

판사박혜선

판사강경표